

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안경위

가. 제 출 자 : 이은주 의원 외 9명

나. 의안번호 : 제2108호

다. 제출일자 : 2021. 1. 11.

라. 회부일자 : 2021. 1. 21.

2. 제안사유

- 본 조례안은 최근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마스크 미착용 등 택시 내 위생, 방역과 관련하여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운송을 거부할 수 있는 내용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음
- 또한 여객이 전염병 예방과 확산 및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한 택시이용에 목적을 두고 있음

3. 주요내용

가. 개인택시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여객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그 운송을 거부할 수 있으며, 이미 승차한 경우 하차하도록 할 수 있다. (안 제5조제5항)

나. 시민은 전염병 예방 및 확산·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(안 제6조제3항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, 「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」 등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입법예고

○ 기 간 : 2021. 1. 26. ~ 2021. 2. 2.

○ 제출의견 : 없음

다. 관련부서 의견조치 결과¹⁾

○ 제출의견 : 원안 가결

- 우리시는 「서울시 택시운송사업 운송약관」 제11조(운송의 거절)에 택시 내에서 여객이 감염병 위기 정보에 따른 마스크 미착용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택시기사는 운송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
- 본 조례개정안은 택시 내 방역지침 미준수 및 폭행 등 안전을 위해하거나 피해를 주는 여객의 경우 승차거부를 할 수 있고, 여객은 전염병 차단을 위해 협조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
- 따라서, 본 조례개정안은 우리시 택시정책 기본방향에 부합하고 안전한 택시 운송을 위한 것으로 운수종사자와 시민의 의무사항으로 제도화 할 필요성이 있어 원안에 동의함

1) 택시물류과-4349호(2021.2.1.)

5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장훈)

가. 개요

- 동 개정조례안은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개인택시 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가 여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운송을 거부하거나 승차한 승객을 하차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승객 협조 의무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

나. 검토의견

■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 관련(안 제5조제5항)

- 동 개정조례안은 개인택시 여객이 안전을 위해하거나 방역에 피해를 줄 경우 및 폭행·협박으로 직무집행이 방해되는 경우 등에 대해 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가 운송거부 또는 이미 승차한 여객을 하차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
-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교통수단에 대한 방역 관리 강화가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실정으로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

법률」이 '20년 8월 12일에 개정²⁾됨에 따라 서울시장은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 준수조치를 이미 시행하는 등 코로나19와 관련해 교통수단에 대한 방역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강화된 상태임

- 서울시 택시 업계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방역지침 강화 현실을 반영하여 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」 제9조³⁾ 및 시행규칙 제30조⁴⁾에 따라 「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 운송약관」을 변경하여⁵⁾ 마스크 미착용 승객의 승차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이미 마련한 바 있음⁶⁾

2)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(감염병의 예방 조치)

- ① 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,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,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.

2의3. 버스·열차·선박·항공기 등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<법률 제17475호, 2020. 8. 12, 일부개정, 시행>

3)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(운송약관)

- ① 운송사업자는 운송약관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운송약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.
- ④ 제1항의 운송약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
4)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0조(운송약관의 기재사항)

법 제9조에 따른 운송약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.

8. 여객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

10. 그 밖에 이용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5) 서울시 택시운송사업 운송약관 변경승인 검토보고 : 택시물류과-23231호('20.6.10.)

6)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 운송약관 제12조(운송의 거절)

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.

1. 법정 전염병환자가 승차하는 경우
2. 제7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
3. 제10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
4.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명시된 화물의 운송을 요구하는 경우
5. 폭발성물질, 부식성물질, 인화성물질 등 위험물의 운송을 요구하는 경우

- 또한 ‘20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 중앙심판위원회⁷⁾에서는 “택시 승객 갑질로 인한 승차거부는 정당하며 택시기사 권익도 보호해야”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음
-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을 통해 택시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여객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운송거부와 여객하차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택시의 특성과 선량한 택시이용자의 안전보호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

■ 시민의 권리와 의무 관련(안 제6조제3항)

- 동 개정조례안은 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시민의 협조 의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에 시민의 협조 의무가 일부 규정되어 있고, 마스크 착용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흡입량 감소되는 등⁸⁾ 최근의 코로나19 피해를 조기 극복하기 위해서

-
- 6. 시체 및 동물(사업자 또는 다음 승차할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동물. 다만, 운반상자에 넣은 반려동물 및 공인기관에서 인증한 맹인 인도견은 제외)의 운송을 요구하는 경우
 - 7. 불결, 악취 등으로 여객의 운송에 장애를 초래하는 물품의 운송을 요구하는 경우
 - 8. 기타 안전에 위해를 주거나 차량을 훼손할 염려가 있는 물품의 운송을 요구하는 경우
 - 9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한 제1급 감염병의 위기 경보 수준이 ‘심각’ 단계의 경우,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<신설>

7)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: '20.10.13.

- 국민권익위, “택시 승객 갑질로 인한 승차거부는 정당” 행정심판 결정
- 중앙행정심위, 승객뿐만 아니라 택시기사 권익도 보호해야...

8) 마스크, 코로나 차단 효과 어느 정도?... 직접 실험해보니 : 한국경제('20.10.23.)

는 시민의 협조가 절실하고, 이를 통해 택시 이용 승객의 편의 및 서비스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